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진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최진혁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장태용, 최민규, 한 신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2022년 「도시정책지표조사」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가구의 22.2%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5년 전인 2017년 19.4% 대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반려동물 보유 유형에서는 ‘개’가 82.2%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민원 등을 이유로 놀이터 공급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(안 제2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 등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자치구”를 “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자치구</u>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6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구 -----</u>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